

2025.4. 관계부처 합동

※ 본 공모 지침은 2025.4.29.자로 수정공고 되었습니다.
(수정사항) 공모접수 마감일자를 '25.5.2(금)에서 '25.5.14(수)로 변경

2025년도 지역상권활력지원 공모 지침

- I. 지역상권활력지원 공모사업 개요
- II. 2025년도 공모계획
- III. 공모 평가계획 및 접수방법
- IV. 공모 참고자료

행 정 안 전 부

문화체육관광부

국 토 교 통 부

중소벤처기업부

1. 추진배경

- 로컬콘텐츠 활용 및 상권 활력제고를 위해 관계부처가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나, 분절적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한계
 - 민간이 자생적으로 부처간 사업을 공동 지원받는 사례가 등장하나, 개별공모·산발적 지원으로 파급효과 및 현장 체감도가 제한

⇒ 민간과 지자체의 '매력있는 상권 조성 노력'을 중앙부처가 협업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 발표('24.8.21 경제관계장관회의)

2. 추진방향

- 민관이 함께 로컬·상권의 혁신가치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민관협력 지역상권 활력지원'(가칭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추진
 - ※ Local (지역) + Innovation(혁신) : 로컬 콘텐츠, 특화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상권의 혁신가치를 창출 → 창업·일자리 확산으로 지역소멸을 해결하겠다는 의미
 - (지원대상/규모) 인구감소·관심지역(전국 107곳) / 20억원(국비·지방비) + 연계사업 등
 - * 지원기간 : 2년(지역상권 활력지원 사업) + α(사업별 상이)
 - (민간주도) 민간*(상권기획자·로컬크리에이터 등)이 발전전략을 기획, 지자체는 인프라 제공·개선, 지방비 투입, 조례제정 등 뒷받침
 - * 민간 자부담 필수 / 민간 참여도(투자)를 평가에 반영
 - (통합공모) 관계부처(중기·행안·국토·문체부)가 상권, 로컬 및 지역특화 인프라 등 연계가능한 사업을 메뉴판 형식으로 제공하여 통합 공모
 - * (중기부) 상권소상공인창업 등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국토부) 도시재생씨앗융자 등
 - (연계지원) 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 연계사업을 범부처가 함께 지원하고 선정시 각 연계사업 동시 인정, 우대 등 지원
 - * (예시) 지역상권활력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 도시재생씨앗융자+ 소상공인협업활성화 등

II

25년도 지역상권활력지원 공모 계획

1

공모개요

- (공모대상) 지역상권 활력지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전국 107곳 붙임1 참고) 기초지자체+주관기관(상권기획자) 컨소시엄
 - * (상권기획자) 소상공인 등과 협업하여 상권을 발굴·기획 및 실행하는 전문법인으로, 상권발굴 및 전략기획, 유망 소상공인 발굴·교육·투자 등의 역할 수행
- (선정규모) '25년 신규 2곳 내외, 1곳당 최대 20억(국비50:지방비*50)
 - * 지방비는 총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기초지자체가 편성하되 광역지자체 예산이 포함될 수 있으며, 민간자부담(현금·현물 및 민간투자 등) 필수
 - ** 선정규모 및 지원금액은 평가 및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방식) 기초지자체가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정부 및 민간전문가가 합동으로 평가(서면→현장·발표)를 실시하고,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대상지 선정
- (사업기간) 2년(지역상권활력지원) + α(연계사업)

2

지원사항

- (지역상권활력지원) 상권구역의 S/W전략(상권브랜딩, 소상공인 역량강화 등) 실행부터 H/W구축·개선(공간 리모델링, 공동시설 조성 등)까지 **민간이 기획한 상권 발전전략의 실행 지원**
 - (예산) 2년간 최대 20억원
 - < 사업 예시 >
 - ◆ 지역의 **고유자원(문화, 음식 등)**을 활용하여 **로컬컨텐츠를 개발**하고, 빈점포 리모델링 및 청년창업, 기존점포 리뉴얼 등으로 **지역특색이 반영되는 상권 조성**
 - ◆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창작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공유형 공간 조성**
 - ◆ 지역 브랜딩을 위한 **상품개발, 지역축제 개최, 상인 역량강화 교육** 등 추진
- (연계사업) 수립된 전략 맞춤형으로 연계사업의 동시 인정 및 우대
 - * (예시) 지역상권활력지원 + 소상공인협업활성화 + 지방소멸대응기금 + 지역특화재생 등
 - 단, 개별사업별 법령 및 지원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 선정 절차가 있는 경우 해당 공고·선정규정에 따라 후속절차 이행

지역상권활력지원 연계사업 메뉴판

〈사업 메뉴판〉		〈주요내용〉
중 기 부	① 지역상권활력지원	▶ 민간과 지역 주도(상권기획자·지역기업자·자체 등)로 상권 활력 프로젝트 추진시 매칭 지원(25년 시범 / 개소당 20억원)
	② 상권활성화사업	▶ 상권 활성화구역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계획수립을 통한 특화상권 조성 지원(국비 최대 50억원)
	③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 지역자원을 소재로 창의성·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 발굴·육성
	④ 로컬브랜드 창출	▶ 로컬크리에이터 등 협업과 로컬브랜드 창출을 위한 사업화·실행 자금 지원
	⑤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	▶ 협업모델창출부터 온라인·글로벌 진출까지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지원
	⑥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예비소상공인의 창업아이디어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상담·코칭, 보육공간,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
	⑦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상권형-공동사업화)	▶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 간 조직화와 함께 공동 사업, BM 창출·실행 등 사업화 자금 지원
	⑧ 소공인 스마트제조 (클러스터형)	▶ 소공인 클러스터 구성을 통한 공동 스마트화를 지원하여 디지털 기반 조성
	⑨ 시장경영패키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상 상인 주도 맞춤형 사업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배송매니저 등) 지원
	⑩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 상권 내 소상공인에 주문, 생산, 서비스, 경영 등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지원
관 계 부 처	① 지방소멸대응기금	▶ (행안부)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대상으로 창업·일자리, 문화관광,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인프라 프로그램 등 지원
	② 청년유입 및 체류 지원	▶ (행안부) 청년주도로 지역살아보기, 창업 실험, 유희공간 활용 공간 조성, 교류소통 행사 등 운영 지원
	③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 (행안부) 지역 고유가치를 기반으로 차별화되는 성장 기반을 마련 위해 지역현장 맞춤형 특화전략 수립 지원
	④ 관광교통촉진지역	▶ (문체부)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한 신규 교통망(생활노선-관광지 경유형) 확충
	⑤ 쇼핑관광 기반조성	▶ (문체부) 지역 특화 쇼핑관광 브랜드 기획 및 쇼핑 편의 서비스(즉시환급, 간편결제 등) 개선 지원
	⑥ 도시재생 씨앗융자	▶ (국토부) 쇠퇴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로컬 크리에이터 등에게 커뮤니티 공간 조성 자금 융자지원
	⑦ 지역특화재생	▶ (국토부) 역사문화 등 지역 고유자산 활용한 도시브랜드화 추진 및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통한 강소도시 육성
지 자 체	자체 사업 지원	▶ 우수상권 벤치마킹, 환경개선, 특화행사(이벤트 등) 등 ▶ 신규조직화, 문화공간 조성, 브랜드거리 조성, 콜라보 상품 개발, 연대상권 육성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등 ▶ 골목상권 주도 콘텐츠 사업지원, 소비촉진 이벤트, 공동마케팅, 플랫폼 맵 등록, 상권 브랜드·로고 개발 등

연차별 연계지원(안)

구분	1년차	2년차 이후	연계내용
중기부	지역상권활력지원	지역상권활력지원(계속)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상권형-공동사업화) 상권활성화사업	우선 지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로컬브랜드 창출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소공인 스마트제조(클러스터형) 시장경영패키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우대 지원
관계부처	(국토부) 도시재생 씨앗용자	(국토부) 도시재생 씨앗용자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지원
		(행안부) 청년유입 및 체류 지원 (행안부)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문체부) 관광교통촉진지역 (문체부) 지역쇼핑관광기반조성 (국토부) 지역특화재생	우대 지원
지자체	지자체 자체 사업지원	지자체 자체 사업지원	-

3

신청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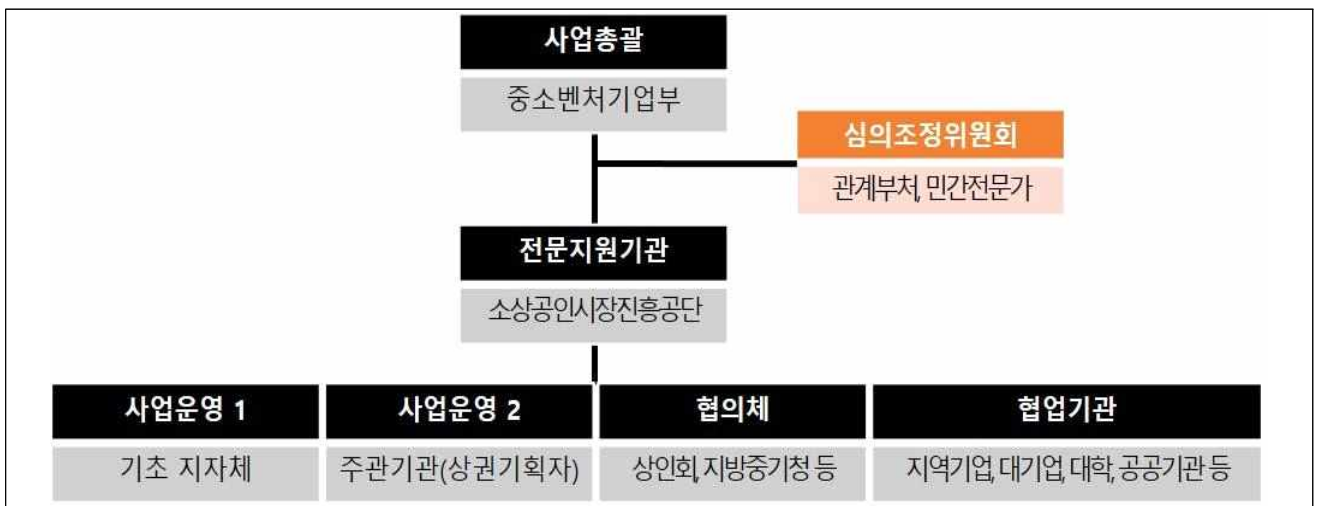
- (대상지 요건) ①인구감소·관심지역(전국 107곳 불임1 참고)의 ②점포수 50개 이상(빈점포 제외)을 포함하는 예비상권구역
- (주체 요건) ①지방비* 매칭이 가능한 기초지자체, ②상권기획자로서 상권구성원 등과 협업하여 상권발굴 및 전략수립~실행까지 전문 수행이 가능한 법인인 주관기관**
 - * 전체 사업비의 50%, 지방비 구성시 광역지자체 예산 및 민간자부담 포함 가능
 - ** 상권분야 전문성을 갖춘 법인으로서 기업, 로컬크리에이터, 비영리법인 등 형태 무관
- ※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 컨소시엄 구성 후 광역지자체로 신청하여 광역지자체가 최종 제출, 기초지자체당 신청 건은 1건으로 제한
- (중복 제외) '25년 접수마감일 기준 ①상권활성화(舊 상권르네상스)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구역이 전부 또는 일부 포함되는 경우, ②구역 내에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 (계획수립) 민관이 함께 로컬의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대상지를 설정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 수립
- (계획 주요내용) 지역상권 활력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과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적인 수치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
 - (사업개요) 활력지원 사업 추진 필요성과 상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비전 설정
 - (상권분석 및 필요성) 사업이 진행될 지역의 범위와 특성을 명확히 서술하고, 입지·지역자원·경쟁상권 등 상권분석 내용 기재
 - * 대상상권 기준 :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점포수 50개 이상 상권
 - (세부 추진계획) 사업 추진체계 및 세부 사업내용, 연계사업, 사업 추진 가능성, 연차별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추진체계) 사업추진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현황과 구성원별 역할,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등 제시
 - (추진계획) 사업 추진전략 실행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작성하며, 목표수량, 일정, 예산 등이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
 - * 로컬콘텐츠 창출, 상권 거점 조성·운영, 상권주체 역량가화, 민간투자 유치계획 필수 포함
 - * 시설·환경개선(H/W) 사업은 운영관리 주체 설정 및 관리방안 제시 필요
 - (사업추진 가능성) 대상지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자체의 지원계획 및 사업추진에 따른 갈등요인에 대한 대처방안 작성
 - (예산 총괄표) 연차별 예산계획 및 세부사업별 예상 소요비용
 - * 사업비의 경우 국비, 지방비(광역·기초), 민간 자부담(필수)으로 구분하여 작성
 - (추진 일정표) 전략에 따른 추진과제와 세부 과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연차별 추진일정 작성
 - (성과목표 측정지표) 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한 주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사업 추진에 따라 기대되는 정략적·정성적 효과 기술
 - * 성과지표의 경우 성과측정·관리방안을 포함

5

사업관리

- (중소벤처기업부-관계부처) 지역상권활력지원 운영 총괄, 연계사업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계획 수립 지원, 사업비 집행관리 및 사업 이행수준 점검 등 전문지원기관 역할 수행
- (기초지자체) 지방비 매칭 재원마련, 공간 등 인프라 제공, 필요시 조례제정 등 행정적 지원 및 사업비 집행 수시 관리·점검
 - ※ 지방비 비율 및 행정 여건에 따라 위 역할은 광역지자체와 분담 가능
- (주관기관(상권기획자)) 상권 발전전략 기획·실행, 상권 내 소상공인 조직화 및 협의체 운영, 민간 협업활성화 등
- (사업협의체 등) 상권내 의견수렴, 의사결정 등을 위하여 상인, 주민, 지자체 담당자 및 지방중기청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기구를 둘 수 있음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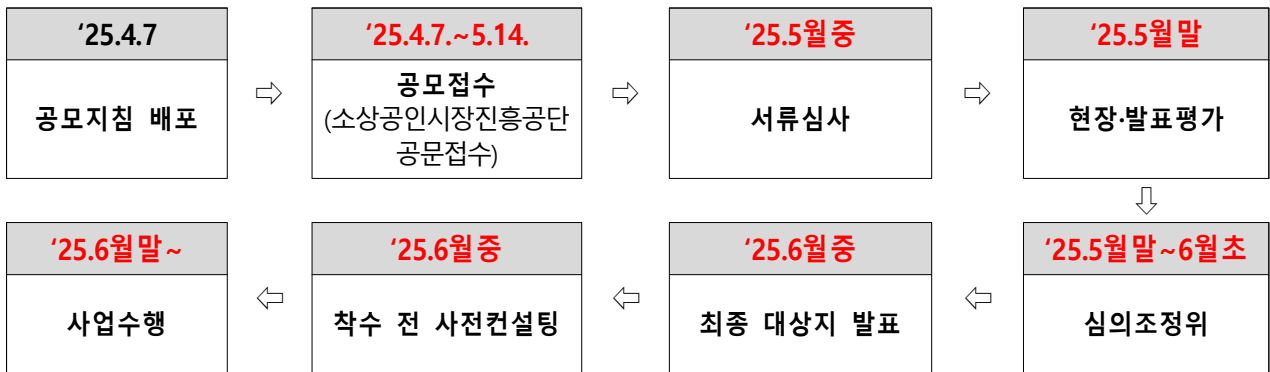
- (사업운영) 기초지자체와 주관기관을 포함하여 사업 운영체계를 구성 하되, 각 주체별 역할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사업계획서를 작성
- (사업관리 등) 사업비 관리·집행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을 준용하되, 세부사항은 지역상권활력지원 운영 및 집행지침에 따름
 - * 중기부와 소진공은 운영 및 집행지침에 따라 사업비 집행현황 등을 수시점검 할 수 있음

- (사업취소 등) 선정 이후 사업계획이 크게 변경되거나 지연되어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적 사업내용 수정이 있는 경우, 지방비 미확보 등 사정으로 사업 추진 어려운 경우 취소 가능

6

주요 추진일정

- (공모접수) '25.4.7(월)~5.14(수) → (선정) '25.6월(잠정)



※ 주요일정은 향후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Ⅲ

공모평가계획 및 접수방법

1

평가계획

- (평가위원회)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평가 및 현장·발표평가를 거쳐 점수 산출
 - (서면평가)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일정배수의 현장평가 대상지 선정
 - (현장·발표평가) 현장여건 및 입지를 점검하고,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역량 및 지자체 의지 등 확인
- (심의조정위원회) 예산투입 적정성, 지역 균형발전,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대상지 선정
- (선정기준) 사업수행역량(30점), 사업추진계획(40점), 지속가능성 및 기대효과(30점)로 구분(상세기준은 참고자료2 참고)

2

접수방법

- (접수기간) 2025.4.7(월) 9:00 ~ 5.14(수) 18:00까지
- (제출자료)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참고자료4 양식)
- (제출방법) 컨소시엄(기초지자체, 주관기관)이 작성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광역지자체가 컨소시엄별로 취합하여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로 신청서류 일체 제출(제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3

접수문의

- (사업설명회) 2025.4.14(월) 14:00, 대전역(KTX) 회의실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215, 5층 우암홀)
-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4-204-7884, 788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042-363-7603, 7929

붙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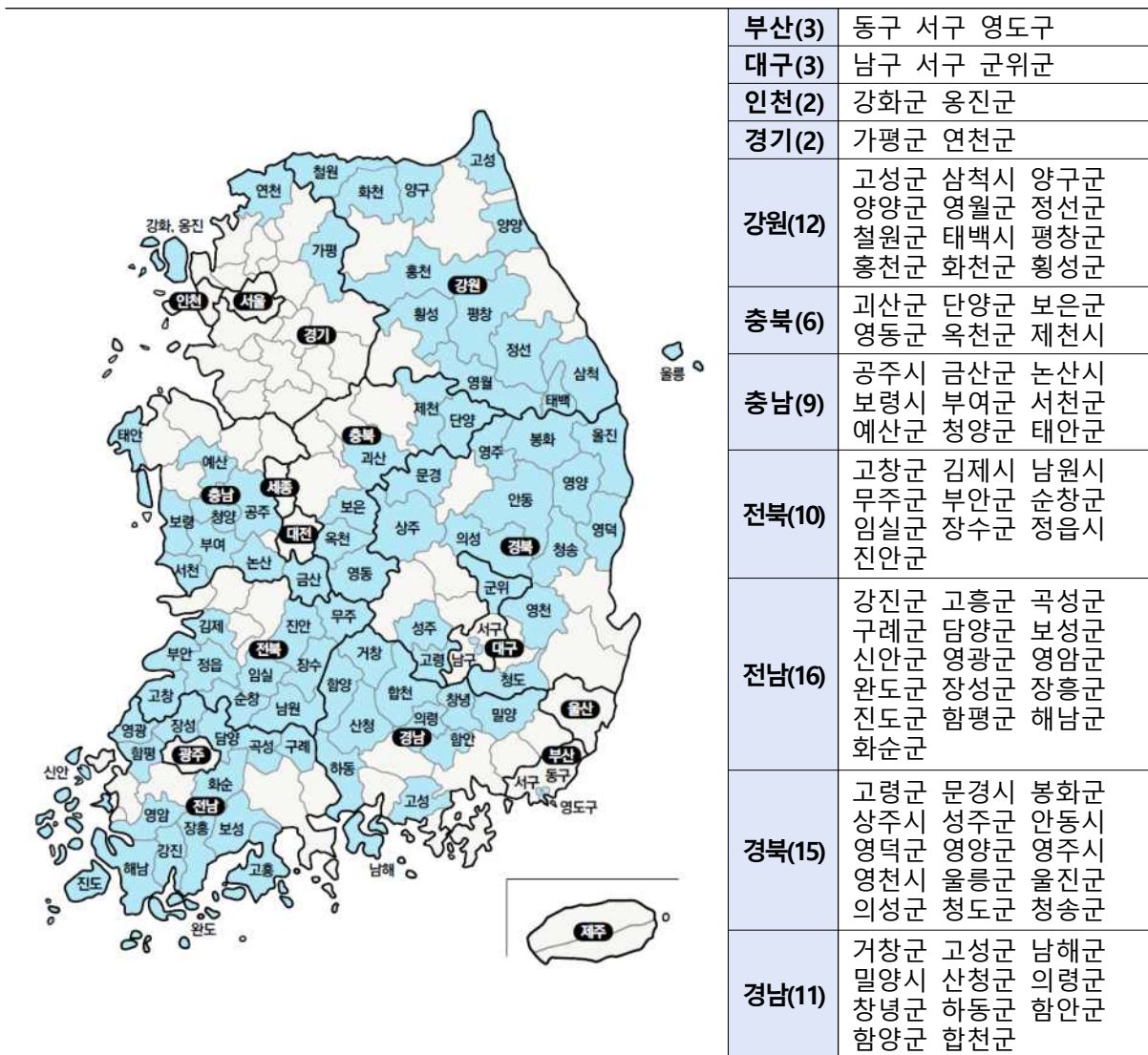
인구감소(관심) 지역 현황

□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행안부, '21.10월)

* 법적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5년마다 재지정)

○ 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등 8개 지표*를 활용한 인구감소 지수를 바탕으로 지정

*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 인구감소 관심지역 현황(18개 지역)

대전(동구, 중구, 대덕구), 부산(중구, 금정구), 광주(동구), 경남(통영시), 강원(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경북(경주시, 김천시), 경남(사천시) 전북(익산시), 인천(동구), 경기(동두천시, 포천시)

지역상권활력지원 공모 참고 자료

- 참고1 2025년 지역상권 활력지원 세부일정
- 참고2 2025년 지역상권 활력지원 평가기준
- 참고3 부처별 연계사업 담당자 및 사업별 세부내용
- 참고4 지역상권 활력지원 제출서류 양식
- 참고5 지역상권 활력지원 사업비 편성지침

참고 1

2025년 지역상권 활력지원 세부일정

추진절차	추진시기	주요내용	비고
공모지침 배포	'25.4월	· 공모지침 배포	부처통합
↓			
사업설명회	'25.4월	· 참여의사가 있는 지자체 및 주관기관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모사업 접수	'25.4.7~ 5.14	· 지역상권 활력지원 신청서 접수 * 온나라 전자문서로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평가위원회 구성	'25.5월	·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구성	부처통합
↓			
사업 평가	서면심사	· 요건검토 등 서면 심사	평가위원회
	현장·발표 평가	· 현장입지 점검 및 계획서 발표평가	
↓			
심의조정위원회	'25.5월말 ~6월초	· 평가결과 검토 후 대상지 선정 심의	부처통합
↓			
결과통보	'25.6월 (예정)	· 선정결과 지자체 통보 및 홍보	중소벤처기업부
↓			
사전컨설팅	'25.6월	· 착수 전 사업계획 전문가 컨설팅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업 수행	'25.6월	·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 착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주체

※ 주요일정은 향후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참고 2

2025년 지역상권 활력지원 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 주요 내용	배점	
사업 수행 역량	사업 추진체계	- 상권기획자 보유 역량 - 컨소시엄 구성, 운영 계획의 적절성 - 민간 주도적 사업 추진체계 구축 - 사업 관련 전문가 확보 여부	10	30
	사업추진의 필요성	- 사업의 타당성 및 상권의 발전가능성 - 지역상권 활력지원 관련 사업 간 연계 추진 시너지 효과	10	
	입지 적정성	- 전략 실행을 위한 구역 설정 적절성 - 상권구역 및 주변 인프라, 주요지점 등에 대한 연계 가능성 - 상권 보유자원을 활용한 계획 수립	10	
사업 추진 계획	사업내용의 구성 및 연계성	- 지역상권 활력지원 사업계획의 구체성 - 사업 규모·추진일정의 적절성	10	40
	사업 추진계획	- 상권 특화 전략의 적절성 (지역사회 문화, 특성 등 반영) - 전략 계획의 현실성 - 상권 구성원 역량강화 방안	15	
	사업추진 가능성	- 지자체 행정적·재정적 지원 계획 - 지역자원 발굴내용	5	
	상인·주민 참여 및 갈등관리	- 계획수립 과정에서 상인·주민 등 참여 및 의견수렴 여부 - 구성원 간 분쟁에 대한 조정방안 등	5	
	사업 확장성	- 타부처 사업 연계 계획의 효과성 - 민간투자 유치 계획의 효과성	5	
사업 지속성 및 기대 효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	- 사업 성과관리 계획의 구체성 - 지역경제 파급효과	15	30
	지속 가능성	- 사업 후 상권 재생 가능성 - 상권 내몰림 방지대책의 현실성	10	
	사업 유지·관리 계획 적절성	- 사후관리 계획의 적절성	5	
총계			100	
민간의 참여 적극성	가점 (최대 2점)	민간의 사업참여 정도 (총 사업비 대비 민간투자 비중, 주관기관 현물 매칭은 제외)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비 대비 민간투자 10% 이상	2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비 대비 민간투자 5% 이상	1	
사업 연계	가점 (최대 3점)	글로벌상권(중기부) 대상지로 선정이 완료된 경우	1	
		지방소멸대응기금(행안부) 연계가 당해 사업계획서에 포함 된 경우	1	
		중앙부처 사업 연계(직접적인 관련성·입지여건 고려)	1	

※ 가점은 종합평가에만 적용(서면심사·현장평가에는 가점 적용 X)

참고 3

부처별 연계사업 담당자 및 사업별 세부내용

1. 연계지원 사업 리스트 및 담당자

연계 유형	연계사업	국비보조	지원부처	담당자	연락처
우선 지원	지역상권활력지원	최대 10억원	중기부	강효민 事 허 양 主	044-204-7884 044-204-7887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내 지자체 자율 편성 (광역계정 지원 권장)	행안부	강경국 事	044-205-3522
				김창균 事	044-205-3509
	도시재생씨앗융자	50억원 이내 융자지원	국토부	이미래 事 남혜림 主	044-201-3710 044-201-3719
	상권활성화사업	최대 50억원	중기부	박현용 事 강혜진 主	044-204-7885 044-204-7886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상권형-공동사업화)	최대 1억원	중기부	공 윤 事 윤혜림 主	044-204-7280 044-204-7868	
우대 지원	청년 유입 및 체류지원	6억원	행안부	김윤희 事 권기현 主	044-205-3435 044-205-3457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기획디자인) 3억원 (특화인프라) 최대 10억원	행안부	김원한 事	044-205-3912
	관광교통촉진지역	4억원	문체부	조영미 事 정소희 主	044-203-2843 044-203-2846
	지역 소풍민방 기반조성	3억원	문체부	임정윤 事 정소희 主	044-203-2845 044-203-2846
	지역특화재생	최대 150억원	국토부	정진현 事 고은미 主	044-201-4905 044-201-4904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최대 40백만원	중기부	이청수 事 강태수 主	044-204-7854 044-204-7283
	로컬브랜드 창출	최대 2.5억원	중기부	이청수 事 강태수 主	044-204-7854 044-204-7283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최대 1억원	중기부	이청수 事 강태수 主	044-204-7854 044-204-7283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최대 40백만원	중기부	김대욱 事 박찬영 主	044-204-7285 044-204-7830
	소공인 스마트제조 (클러스터형)	최대 42백만원	중기부	남궁은영 事 차우건 主	044-204-7882 044-204-7883
	시장경영패키지	최대 36백만원	중기부	양승헌 事 백재준 主	044-204-7902 044-204-7896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최대 10백만원	중기부	정영훈 事 윤지영 主	044-204-7875 044-204-7876

2. 연계지원 사업별 세부내용

< 우선지원 >

1. 지방소멸대응기금(행안부)

-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 (규모/근거) 연 1조원(기초75%, 광역25%) 규모로 10년간 지원('22년~'31년)
 ※ '22년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총 0.75조원 규모로 지원
- (운용방법) 기금관리조합(17개 시·도로 구성)이 관리·운영*하되, 기금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안부장관이 정함('22.2월 배분기준 고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하여 업무 수행
- (배분계획) 기초는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 광역은 인구·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액 배분
 - (기초계정) 자치단체가 수립한 투자계획 평가* 및 등급별 차등 배분
 * 조합에서 위촉한 평가단이 수행(서면검토→대면평가→종합평가)
 - (광역계정) 평가 없이 인구·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액 배분

지방소멸 대응기금 (연 1조)	기초계정 (75%, 7,500억)	인구감소지역 89개 (95%, 7,125억) 관심지역 18개 (5%, 375억)	▶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차등 배분 ⇒ 성과 지향적 운용
	광역계정 (25%, 2,500억)	인구감소지수, 재정자립도,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 (1,500억)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출자(1,000억)	▶ 산식에 따라 정액 배분 ⇒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운용 ▶ 대규모 펀드사업 추진 지원

※ (통합공모 연계) 통합공모 선정 시, 사업 지원(기금 평가 시 가점 부여)

2. 도시재생씨앗융자[국토부]

□ 개요

- (목적) 지자체 지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융자를 지원하여 노후 도심 활성화

□ 지원내용

- (대상)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상가, 창업시설 등을 조성하려는 민간, 공공 등
- (조건) 총 연면적 1만㎡ 미만 시설 조성에 대하여
총사업비 70% 이내(민간 50억, 공공 100억) 7년간(최대 12년까지) 지원
* 다만, 투기과열지구 여부 또는 지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융자한도 제한 적용(0~60%)
- (금리) 개인·일반법인 연 2.2%, 공공·사회적경제주체 연 2.0%,
주택조성 시에는 차주 구분 없이 연 4.0% 적용
- (유형) 조성하고자 하는 시설에 따라 상가조성자금,
생활SOC조성자금, 창업시설조성자금 총 3개 상품으로 구분

□ 상품 유형

구분	기본 한도	이율(변동금리)	융자 조건
상가조성자금	총사업비의 70% 이내	[주택○] 연 4.0% [주택X] 연 2.2% *공공/사회적경제주체 차주인 경우 연 2.0%	· 상가주택 임대조성 비율 총연면적의 50% 이상 · 주택조성 면적은 총연면적의 50% 이하 · 임대료 인상률은 주택 3%, 상가 25% 초과 금지 · 조성 주택 내 차주 및 차주 가족 거주 금지
생활SOC 조성자금		연 2.0%	· 생활SOC의 연면적은 전체 50% 초과
창업시설 조성자금		연 2.2% *공공/사회적경제주체 차주인 경우 연 2.0%	· 조성시설은 제3자에게 임대 불가

- (지원절차) 융자 신청(수시, HUG) → 융자 심사·승인·집행(HUG)
→ 사후관리(HUG)

※ (통합공모 연계) '25년 통합공모 선정 시 우선 지원(심사기준 충족 시)

3. 상권활성화사업[중기부]

□ 개요

- (목적) 쇠퇴한 지역 상권의 재도약을 위한 종합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내용) 소상공인·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테마공간 조성, 상품 개발, 판촉 등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구역당 3+2년간 최대 100억원 내외(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대상)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지역상생구역

전통시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상권활성화구역(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해당 상권의 상인, 임대인 각 1/2 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권관리기구) 전통시장법 제19조의8에 따라 설치
지역상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①자율상권구역, ②지역상생구역(지역상권법 제2조제2호및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해당 상권의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각 2/3 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자율상권조합) 지역상권법 19조에 따라 조합 설립 ②^{가칭}(지역상생조합)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상권관리기구로 해당 조합의 설립은 지역상권법 19조 준용 및 중기부 협의

- (필수요건)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지역상생구역 지정 (시·도에서 사업 대상지 추천(매년 3월말) 전까지 구역 지정 완료)
- (신청절차)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는 시·군구의 신청을 받아 지방비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특회계를 통해 신청
- ※ (통합공모 연계) '25년부터 통합공모 선정 시, 차년도 우선지원

4. 소상공인 협업활성화(공동사업화)[중기부]

□ 개요

- (목적) 소상공인 간 협업 및 이익 창출을 위해 공동사업, 판로 등 협업사업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
- (현황) '24년 공동사업 112개 조합, 판로 334곳, 아카데미 3곳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11,540백만원
 - * 내역사업 예산은 11,540백만원이며 상생컨소시엄(240백만원) 별도 운영
- (지원대상 및 요건) 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5인 이상의 협동조합 등 협업체
 - 1)협동조합기본법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2)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3)지역상권법(자율상권조합), 소상공인 협회·단체, 소상공인 지원기관 등
 - 4)연합회 :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 이상으로 구성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동조합 20개사 이상(조합원 100명 이상)으로 구성 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 5)협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5인 이상의 소상공인 협업체
- (지원내용 및 범위) 지원분야 자유 선택 및 운영기관 매칭 방식 혼용

구분	유형	지원대상	지원항목	지원한도
공동사업	상권형	협업체 컨소시엄*	상권활성화 체계마련을 위한 공동사업 등	* 골목경영패키지 최대 0.5억원(90%) * 동네상권발전소 후속 사업화 최대 5억원(80%)
	산업형		업종간 협업을 위한 공동사업 등	* 최대 2억원(80%)
	조합형	협동조합	개발 네트워크 규모화 프랜차이즈 장비 등	* 최대 1억원(70~80%)
판로		협업체	온/오프라인 판로(해외진출 포함)	-
아카데미		협업희망자	인큐베이팅, 지역상권조합 결성 등	

* 협업체 컨소시엄: 협업회사 로컬크리에이터 등(대학 비영리법인)+ 소상공인 등

** 판로 및 아카데미의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통한 지원판로: 판로 전문기관/ 아카데미: 인큐베이팅 기관

- (지원절차) 모집공고 및 신청(~3월) → 선정평가(4월) → 선정(~4월) → 사업 추진(5월~)

※ (통합공모 연계) '25년부터 통합공모 선정 시, 차년도 우선지원

< 우대지원 >

1. 청년 유입 및 체류지원(행안부)

□ 개요

- (목적)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등에 청년 생활인구 유입 및 정주 여건 조성으로 청년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 제공 및 지역에 활력 제고
※ 국정과제(119-4) 참여·협력·혁신을 통한 로컬 창조커뮤니티 기반 조성
- (현황) 전국 39개 청년마을 조성·운영
※ ('18~'20년) 매년 1개씩 총 3개 시범 조성 / ('21~'23년) 매년 12개씩 총 36개 조성 / '25년 신규 청년마을 12개 선정 예정

□ 지원내용

- (사업규모) '25년 75억원(전액 국비)
- (지원금액) 지역별 6억(기초 시군구별 1개소×2억씩 3년간)
※ 매년 지자체, 청년마을 운영주체 사업 평가를 통해 평가 등급 및 차등 지원 결정
- (지원대상 및 요건) 청년기업(청년의 기준은 각 지자체 조례 근거)
- (지원범위) 신규 청년마을 조성 및 운영 경비*, 컨설팅 등 활성화 지원
*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유희공간 리모델링 등
- (사업내용) 유희공간 활용 활동공간 조성 및 유입 프로그램 운영

구분	청년마을별 주요 추진내용
지역살이	청년마을 숙소 또는 지역 숙박시설 활용 체류 및 지역탐색 프로그램 운영
일거리 실험	지역자원과 연계한 제품서비스 개발, 아이디어 검증, 사업화 실증, 인턴십 등
공간조성	임시 주거(단기, 장기), 공유 오피스, 커뮤니티 등을 위한 활동공간 구축 및 운영
교류·소통	참여 청년-지역주민, 지역 내외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및 협업 추진

- (지원절차) 신규 청년마을 공모 및 선정(1~4월)* → 실행계획서 수립 및 승인(4월) → 사업 운영(4~11월) 및 평가(12월)

* (신청·접수) 청년기업→ 기초 시군구(공문)→ 광역 시도(공문)→ 행정안전부

※ 既조성된 지역활력타운을 신규 청년마을의 활동공간으로 제공 약속서 제출 시 가점

- ※ (통합공모 연계) 통합공모 선정 및 청년마을 연계시 해당지역 지원팀 가점 부여

2.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행안부)

□ 개요

- (목적) 지역 고유가치를 기반으로 차별화되는 지역 성장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의 경쟁력과 활력을 높이고, 지방소멸에 대응

* 국정과제 119-4 참여, 협력, 혁신을 통한 로컬 창조커뮤니티 기반 조성
⇒ 주민참여 로컬브랜딩 생활실험,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등을 통한 창조커뮤니티 확산

- (개념) 생활권*을 단위로, 매력적인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고유한 강점·특색을 강화하여 '살 만하고 을 만하게' 만드는 전략
* 행정구역이 아닌,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단위(도보 15분)
- (현황)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현장 맞춤형 특화전략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23년부터 매년 10개소 선정·지원(사업비, 컨설팅 등)
※ '24년 : 지역이 현장여건에 맞게 지역특성을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지역특색 발굴(기획디자인, 단가 3억)부터 확대·정착(특화인프라, 단가 최대 10억)까지 단계별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10곳 내외 생활권, 유형별 3억원~최대 10억원(특교세)*
* 선정지를 대상으로 신한금융그룹 협력사업('24~'26년간 연 20억원 규모) 추가 지원 예정
 -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50% 이상 매칭
 - (지원대상) 로컬브랜딩을 통해 생활권을 활성화하려는 시·군·구
 - (신청요건)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광역 지방비 매칭 가능)
※ 특화인프라 유형의 경우, 수도권 제외(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가능)
 -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지방비 확보 등)에 대한 지자체 자체심사 후 공문으로 신청
 - (선정절차) 사업공모·접수('25.2.7.) → 실무검토 → 서면심사 → 현장심사 → 최종선정위원회 선정('25.4월 중순 예정)
※ 본 사업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시기 등은 변동될 수 있음
- ※ (통합공모 연계) 통합공모 선정 시, 가점 부여

3. 관광교통촉진지역(문체부)

□ 개요

- (목적) 관광잠재성은 우수하나 지역 내 관광지 연계 교통체계가 취약한 '관광교통 사각지대'의 교통망 개선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
- (현황) '25년 공모 2개 지역 선정(속초시, 영덕군)
 - * 속초(속초관광수산물시장-속초해변-설악산), 영덕(동해선-영덕 대게거리-블루로드)

□ 지원내용

- (지원금액) 1개 지역별 국비 4억원 지원(지방비 50% 매칭 필요)
 - (지원대상 및 요건)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대상 기초지자체
 - (지원내용 및 범위) 지역주민의 생활노선(학교-시장-병원-관공서 등)과 관광지를 경유하는 관광 DRT, 관광셔틀버스 등 운영 지원
 - 지역 관광교통 수단 신규 도입 및 운영 · 교통거점-관광지, 관광지-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교통 수단* 운행 지원
 - * 관광형 DRT(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지역관광셔틀, 관광택시,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 외래객 대상 관광교통 편의서비스 구축 및 운영 · 교통거점(공항, KTX역, 터미널 등) 및 정류장 내 표지판 등 외국어 안내서비스 확충, 외래객 대응 결제 시스템 도입 등
 - (지원절차) 관광교통 촉진지역 공모 및 선정 → 선정지역 대상 컨설팅 지원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 사업 운영 및 평가
- ※ (통합공모 연계) '26년부터 통합공모를 통해 동시 선정

4. 쇼핑관광 기반조성(문체부)

□ 개요

- (목적) 지역 특화 쇼핑관광 브랜드 기획 및 쇼핑편의 서비스 개선을 지원하여 외래객 유치를 위한 지역 쇼핑관광 기반을 조성

※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24.12.26.)

여행 편의 증진을 위한 관광 서비스의 확장 (방한 외래객 결제 수단(간편 QR 결제 등) 확대, 사후환급제도 개선(즉시환급 사후면세점 확대 지원, 사후 환급 정보 종합 제공 등))

- (현황) 2020년부터 매년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 1곳 공모 선정

□ 지원내용

- (지원금액) 1개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 최대 3억원(국비/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지방비 동일규모 이상 매칭 조건(국비 50%, 지방비 50% 이상)
 - ※ 既지원 지자체 및 일부 지자체 지원 제외 : 대구(중구), 전남(무안, 순천), 전북(전주), 경북(영주), 대전, 서울, 제주
- (사업내용) 지역 특화 쇼핑관광 브랜드 기획 및 쇼핑편의 서비스 구축 지원

지역 특화 쇼핑관광 브랜드 기획 및 운영	- 지역 특화 쇼핑관광상품 기획 및 개발 - 지역 특화 쇼핑관광 컨셉(테마) 기획 및 콘텐츠 개발 - 지역 쇼핑관광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 프로모션 추진 - 머스트해브아이템 및 쇼핑접점 연계 콘텐츠 제작 및 홍보 - 해외 여행사 및 OTA 연계 쇼핑관광 여행상품 개발
체험형 쇼핑편의 서비스 구축 및 운영	- 지역 내 주요상권 기반 사후면세(즉시환급) 인프라 조성 - 외국인 관광객 대상 모바일 페이, NFC, 선불카드 등 결제 편의 강화 - 핸드프리 짐보관 서비스 등 쇼핑관광 편의서비스 제공 - 쇼핑관광 온·오프라인 정보제공 및 수용태세 강화 - 쇼핑불편접수내역, 사업성과 분석 등 환류체계 조성

- (추진일정) 사업공모·접수(2월)→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발표심사(3월)
→ 최종선정(4월) → 사업계획 확정(4월) → 사업 운영(~11월) 및 평가(12월)

※ 공모선정위원회(민간 전문가 등 7인 내외로 구성) 통해 1차·2차 심사 진행

※ (통합공모 연계) 2026년부터 통합공모 선정 시, 가점 부여

5. 지역특화재생[국토부]

□ 사업개요 (시·군·구 추진사업)

- (근거) 「도시재생법」 제19조 및 제20조(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 (개념) 역사·문화·산업 등 다양한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하여 도시 브랜드화, 상권활성화, 창업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

□ 사업내용 (국비지원 최대 150억원/4년, 지방비 매칭 40~60%)

- 지역의 특성·상징성을 향상시키는 자율적인 특화재생을 유도하되, 공모 가이드라인을 통해 4개 사업모델 제시(단독 또는 복합 적용)

사업모델	대상지 특성	사업·지원 내용
도시 브랜드화	지역 자산을 활용한 지역 정체성 보존·확립 및 관광객 친화적인 기반 시설 준비가 필요한 지역	역사, 문화, 건축 등 고유자산을 활용한 관광거점 조성, 지역명소와 연계한 방문코스 개발, 도시 브랜드 및 테마 상품 개발 지원
상권 활성화	상권 노후화 등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 준비 및 창업 지원이 필요한 지역	지역 특산물 등을 활용한 스토어 브랜드 개발, 특화거리 조성, 상권 컨설팅 및 창업 공간 지원
창업 지원	지역경제 침체 및 고용위기지역, 지역 대학 및 기업과 연계한 창업 지원이 필요한 지역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을 위한 공유 오피스 조성, 경제주체 육성을 위한 모태펀드 투자 확대
로컬콘텐츠 타운 조성	일자리 창출, 청년인재 유입을 위해 지역자산을 활용한 로컬크리에이터 집중 육성이 필요한 지역	로컬크리에이터 창업 및 네트워킹 공간, 코리빙 하우스 조성 등

□ '25년 공모 계획 (국비 최대 150억원/4년 지원, 지방비 매칭 40~60%)

- (절차) 가이드라인(8월말) → 접수(9월) → 평가(10~11월) → 선정(12월)
- (물량) 사업규모 미정, '25.8월말 공모 가이드라인 배포 시 확정

※ (통합공모 연계) 통합공모 선정 시, 국비 타당성 평가 가점 부여

6.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중기부]

□ 개요

- (목적)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기반으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업가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내용) 지역의 자연·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사업화 지원(최대 4천만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로컬크리에이터의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참고]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

◆ 정의 : '지역의 자연·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 7대 유형의 비즈니스모델로 분류

7대 유형	① 지역가치	② 로컬푸드	③ 지역기반제조	④ 지역특화관광
	⑤ 거점브랜드	⑥ 디지털문화체험	⑦ 자연친화활동	

* 세부내역은 참고1 로컬크리에이터 7대 분야 참조

①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

- 지역의 유·무형 자원 (역사전통, 문화예술, 자연생태, 생활문화, 지역특산물 등)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

②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자

-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수립하는 자

③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내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는 속성을 지닌 만큼, 지역 내 고용창출, 관광객 유치 등 다방면의 활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

- (내용) 로컬크리에이터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최대 4천만원)

* 선정팀의 사업화 지원 자금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하여 지원

- (지원절차) 모집공고 및 신청(~3월) → 심사(4월) → 확정 및 협약(~4월) → 사업화지원(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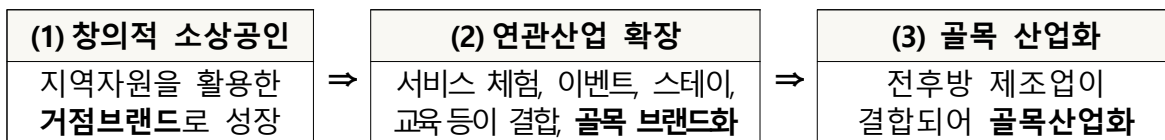
※ (통합공모 연계) 통합공모 선정 시, 해당지역 지원자 가점 부여

7. 로컬브랜드 창출[중기부]

□ 개요

- (목적) 골목상권 내 로컬크리에이터·소상공인 등이 상호간의 사업 아이템 및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하는 로컬브랜드 구축
 - 창의적 소상공인이 모여 연관산업으로 확장되고, 제조업이 결합하여 골목산업으로 발전되는 등 골목상권이 골목산업으로 발전

< 로컬상권이 골목산업화되는 과정 >



- (내용) 상권 기획, 교육·컨설팅, 사업화 등 협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브랜드화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및 요건) 로컬크리에이터가 대표기업이 되어 3개사 이상(대표기업 포함)이 한 팀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팀 구성) 협업팀은 팀 대표기업과 팀원 기업으로 구분하며 사업 신청 및 평가 참여, 협약은 팀 대표기업을 기준으로 진행
 - (지리적 요건) 팀을 구성하는 모든 협업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가 반경 1km 이내에 밀집하여야 함
- (지원내용) 골목상권의 브랜드화를 위한 상권 기획, 교육·컨설팅, 사업화 등 협업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2.5억원 지원
- (지원절차) 모집 및 신청(~3월) → 심사(4월) → 확정 및 협약(~4월) → 사업화지원(5월~)
- ※ (통합공모 연계) 통합공모 선정 시, 해당지역 지원팀 가점 부여

8.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중기부]

□ 개요

- (목적)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함으로써 앵커스토어·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
- (지원방식)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과 혁신 역량을 갖춘 창작자, 스타트업 간 협력·융합을 지원

< 강한 소상공인 육성 유형 >

[1] 소상공인 + 창작자
■ 디자인 브랜딩 패키징 등에 창작자의 무형가치 접목

[2] 소상공인 + 스타트업
■ 기획·판로 등에 스타트업의 속도·편의·효율성 부여

[3] 소상공인 + 소공인
■ 이업종 간의 결합과 협업을 유도하여 상호 간 시너지 창출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및 요건) 소상공인
- (지원금액) 최대 1억원
- (내용) 단계별 경쟁방식을 도입하여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 가능성·성과 등에 따라 사업 고도화 자금 등을 집중 지원
- ① (선발·팀빌딩) 유망 소상공인 발굴 후 창작자·스타트업과 팀 구성
⇒ 구체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한 팀 엄선
- ② (BM고도화) 선발팀을 대상으로 공간기획·시제품 제작 및 실증, 브랜딩·디자인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고도화자금 지원
- ③ (스케일업) 최종 시연회, 온라인 투표 등을 통해 최우수 팀을 선발하여 스케일업을 위한 후속자금을 추가 지원

[1] 선발 및 팀빌딩
■ 팀 선발 및 팀 빌딩

[2] BM고도화(최대 6천만원)
■ 멘토링, BM 고도화 자금 지원

[3] 스케일업(최대 4천만원)
■ 최우수팀 선발 및 추가 사업화 자금 지원

- (지원일정) 모집(~3월) → 심사(4월) → 팀 선발(~4월) → 1차 오디션(6월) → 2차 오디션(9월)

※ (통합공모 연계) 통합공모 선정 시, 해당지역 지원자 가점 부여

9. 신사업창업사관학교[중기부]

□ 개요

- (목적) 성장성 있는 유망한 생활분야 예비소상공인을 발굴하고 라이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된 창업 지원
- (현황) 교육 615명('24년 550명), 사업화지원 520명('24년 468명)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최대 40백만원
- (지원대상 및 요건)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로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
-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창업 프로그램 및 후속 연계·우대 지원, 필요시 창업을 준비하는 사무(보육)공간도 제공할 수 있음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 최대 4천만원 지원(자부담 없음)
 - (창업 프로그램) 미니 피칭대회, 특화 아카데미, 멘토링 등을 통해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사업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① 창업 구체화 지원	② 아이템 사업화 지원	③ 스케일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교육(필수) • 입주공간 배정(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 자금(1천 5백만원) 지원 • 전문가 멘토링 • 특화아카데미 및 피칭대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자금 추가 지원 • 연계사업 코칭, 사후관리 • 피칭대회, 투자사 밋업 등

- (지원절차) 모집 및 신청(~3월) → 심사(4월) → 확정 및 협약(~4월) → 사업화지원(4월~)

※ (통합공모 연계) 통합공모 선정 시, 해당지역 지원팀 가점 부여

10. 소공인 스마트제조(클러스터형)[중기부]

□ 개요

- (목적) 소공인의 공정 디지털화·스마트화 등을 위해 장비(H/W) 임차료, 부품 재료비, 소프트웨어(S/W) 임차료 등 지원

<소공인 스마트제조사업 유형>

구 분	주요내용
개별형 (1개사)	제조·가공·물류 등 공정의 디지털화·스마트화·효율화를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지원
클러스터형 (10~25개사 묶음)	1개 클러스터가 공동과제 발굴 → 공급망 관리시스템, 공동활용 장비 등 지원 → 협업생태계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 지원내용(클러스터형)

- (지원대상) 소공인* 10~25개사를 모집하여 운영기관**이 신청

* 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운영기관 : 소공인 지원센터 운영기관 또는 소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지원내용) 제조공정 스마트화를 위한 장비·소프트웨어 임차비용 지원

- (소공인) 국고보조금 42백만원 이내(자부담금 30% 별도)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만원)	
		국비(70%)	자부담(30%)
하드웨어	스마트화 장비·기계 임차비용	4,200	1,800
소프트웨어	스마트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임차비용	최대 500	최대 360
합 계		4,200	1,800

- (운영기관) 국고보조금 최대 20백만원 범위 내 간접비 지원(국비 100%)

* 운영기관 역할 : 클러스터 추진계획 및 목표 수립, 클러스터 소공인 모집, 특성에 맞는 소(상)공인 연계, 사업수행 간 문제 해결 등

- (지원절차) 모집 및 신청(~2월) → 선정평가(~4월) → 확정 및 협약(5월)
→ 사업 수행(5월~)

※ (통합공모 연계) 통합공모 선정 시, 해당지역 집적지 클러스터에 가점 부여

11. 시장경영패키지[중기부]

□ 개요

○ (목적) 정책 수요자 스스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상점가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

○ ('25년 예산액) 161억원

※ ('22) 141억원 → ('23) 161억원 → ('24) 161억원

□ 지원내용 : 배정예산 한도 내에서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하여 상인 주도로 사업*을 선택·추진

* 공동마케팅, 온라인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 주요 지원 내용 >

구분	사업부문	주요내용
마케팅	오프라인	장보기체험문화교실 등 체험프로그램, 축제·이벤트·문화공연 등 행사, 시장지도·스토리북·리플렛 등 콘텐츠 제작, 기타 홍보 및 마케팅
	온라인	무료배송, 할인 쿠폰, 경품 등 온라인 입점 상품 프로모션 지원과 소모물품, 시장내 배송 위탁 등 배송체계 운영 지원
인력 지원	시장매니저	회계·일반행정 등 상인회 행정사무 및 정부보조사업 관리 상품권 관리 등
	배송매니저	전통시장·상점가 내 공동 택배 배달, 근거리직접배송 등 주문 및 배송의 관리
역량 강화	상인교육	경영, 마케팅, 서비스, 제품개발, 세법, 회계, ICT, 우수시장 견학 등 경영현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경영자문	사업지원, 일반경영자문, 경영전략, 특허·인증 등 시장 경영 자문

○ (지원금액) 1곳 당 국비 36백만원 이하(총 사업비 45백만원 내외)

* 사업비는 국비 80%, 지방비(상인자부담 포함) 20%로 매칭 지원

○ (지원대상) 「전통시장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 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으로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상권관리기구 등

○ (지원 절차) 신청·접수(소진공) → 선정평가·심의조정위원회(지방청)

※ (통합공모 연계) 통합공모 선정 시, 해당구역 지원대상 가점 부여

12.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중기부]

□ 개요

- (목적) 소상공인 사업장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경영지원 S/W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 (내용) 소상공인 사업장에 수요가 많고 비용 절감·서비스 혁신 등의 효과가 있는 스마트기술 보급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내용)

구분	일반형	렌탈형	선도형	SaaS형
지원내용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일반 스마트기술	서빙로봇,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의 1년 렌탈료 지원	스마트기술 패키지, 조리로봇 등 주문 제작 기술	캐시노트, 도도포인트 등 S/W서비스 1년 사용료 지원
지원한도	500만원	350만원	1,000만원	30만원
국비 지원비율	50%	70%	70%	100% (프랜차이즈 단위로 가맹점에 일괄 보급 시 90% 적용)
	70%			
취약계층(간이과세자, 1인자영업자, 장애인사업주) : 80%				

* 보급률이 높은 기술(테이블오더 등 3종)은 지원비율을 50%로 적용하고, 키오스크는 배리어프리(장애인·고령자 접근성 확보) 키오스크로만 보급(일반형, 렌탈형 병행보급)

- (지원절차) 모집공고 및 신청(3월) → 평가·선정(3~4월) → 보급(5월~)

※ (통합공모 연계) '26년부터 통합공모 선정 시, 가점 등 부여

**지역상권 활력지원 사업
운영계획서**

- ○○시 ○○구 ○○동 일원 -

2025. . .

주관기관 : (직인)

사·군·구 : (직인)

※ 사업계획 작성요령

- ① 서식별 파란색 문구를 참고하여 작성 후 파란색 문구 삭제 제출
- ② 가급적 제시한 목차 구성과 작성분량을 준수, 쪽 수(page) 기재
- ③ 본문글꼴 '휴먼명조' 13pt, 세부표 안은 '맑은고딕' 12pt, 각주는 '맑은고딕' 10pt
- ④ 간단한 참고자료, 이미지, 도표 등은 본문에 포함하고 분량많은 자료는 '별첨'
- ⑤ 신청서류는 모두 전자문서 제출이 원칙
- ⑥ 불필요한 미사어구는 최대한 자제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실제 실현 가능한 사항을 작성하며, 실질적인 사업내용과 효과, 사실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기술
- ⑦ 사업개요 및 계획 양식 등은 변경하지 않고 작성하되, 필요시 추가 가능(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
- ⑧ 현황자료의 신빙성 확보 : 자료 출처 명시, 추세분석에 있어 적절한 기간의 자료 사용, 최신 통계자료 사용 등
- ⑨ 서식 및 별첨 서류는 추진한 사항에 대해 첨부

세부 사업내용 (요약)	(비전) (목표) (주요내용)																																										
연계 사업 (해당 시 작성)	<p>· 타 부처 연계사업 :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연번</th> <th>사업명</th> <th>소관부처</th> <th>사업기간</th> <th>사업비</th> <th>추진현황</th> </tr> </thead> <tbody> <tr><td>1</td><td></td><td></td><td></td><td></td><td></td></tr> <tr><td>2</td><td></td><td></td><td></td><td></td><td></td></tr> <tr><td>3</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p>· 지자체 자체 연계사업 :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연번</th> <th>사업명</th> <th>담당부서</th> <th>사업기간</th> <th>사업비</th> <th>추진현황</th> </tr> </thead> <tbody> <tr><td>1</td><td></td><td></td><td></td><td></td><td></td></tr> <tr><td>2</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연번	사업명	소관부처	사업기간	사업비	추진현황	1						2						3						연번	사업명	담당부서	사업기간	사업비	추진현황	1						2					
연번	사업명	소관부처	사업기간	사업비	추진현황																																						
1																																											
2																																											
3																																											
연번	사업명	담당부서	사업기간	사업비	추진현황																																						
1																																											
2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p>※ 상권 내 매출·고용 증가, 빈점포 감소 등 정성, 정량 효과 요약</p>																																										

II. 상권분석 총괄

1. 개괄

※ 상권형성 배경(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쇠퇴원인, 보유자원 및 활성화 전략 등을 총체적으로 간략히 작성

--

2. 구역 경계도

구분	내용
위치	○○시 ○동 ○○ 일대
점포수	00개 (빈점포 00개)
종합 위치도	※ 구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지적도, 위성지도, 사진 등을 첨부 (앞의 구역경계도 또는 사업계획도 이미지보다 자세한 이미지로 첨부할 것)
구역면적	_____m ² (전체면적 중 상업지역_____m ²)
특성	※ 구역의 특성에 대하여 상세하고 일목요연하게 제시

3. 상권 분석지도

※ 상권구역 및 주변(배후지역, 연계가능한 자원, 경쟁상권, 개발계획 등이 드러나도록 구성)



<지도보기> ※ 위 상권구역도 상 주요지점, 연계시설 등에 대한 각주설명

- ①
- ②
- ③
- ④

4. 상권분석 세부 내용

□ 입지분석

- 지리적 특성
- 교통 및 접근성
- 인구, 사회 통계

□ 지역자원 발굴내용 및 분석

- ※ 지역 내 보유자원을 분야별로 기술하되, 사업과 관계없는 자원들은 배제하고, 연계할 자원을 구체적(현황, 특징점, 상업화 및 상권연계 전략, 예산 등)으로 기술
- ※ 현재는 없으나, 앞으로 개발할 자원들도 위 기준에 의거 기술(예 : 창업보육센터 건립, 마을카페 조성, 교육센터 건립 등)

① 역사자원(눈으로 확인가능한 현장 위주. 단순 스토리, 사실 등은 지양)

○

② 문화자원(독특한 생활풍속, 음식문화, 문학·영화·드라마 연계성 등)

○

③ 환경자원(취미, 레저, 스포츠, 신세대 감성·트렌드 등과 연계된 자연환경)

○

④ 지역산업(특화산업, 특산물, 향토기업 등)

○

⑤ 인적자원(대학, 연구소, 기업군 등 인력조달·공급망)

○

⑥ 시설자원(활용가능한 공공건축물, 시설, 주민센터, 창업센터 등)

- ※ 현재는 없으나, 앞으로 조성이 확정(예산, 시기 등)된 건축물, 시설 등도 전략적으로 기술

○

⑦ 사업자원(각 부처, 지자체, 민간사업 등 연계사업, 예산사업에 한함)

○

경쟁상권 현황

경쟁상권 현황지도

<지도보기> ※ 위 경쟁상권에 대한 각각의 간단설명

- ①
- ②
- ③
- ④

경쟁상권 분석

※ 상권과 경쟁이 되는 지역 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대한 설명과 극복전략을 기술

-
-
-
-

Ⅲ. 지역상권 활력지원 세부 추진계획 ※예시, 25p 이내

1. 사업의 필요성

※ 지역상권 활력지원 사업의 취지와 목적, 상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의 전반적인 필요성

2. 사업 목적

※ 사업의 필요성과 연계하여 사업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 목표 제시(인구유치 등)

3. 지자체 및 관계부처 상위계획 연계성

※ 국정과제, 지역상권 종합계획, 시·도 지방시대 종합계획, 기 추진 개발사업 등과의 관계

4. 비전 및 추진전략 (예시)

비 전 지역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로컬·상권의 혁신가치를 창출하는 新상권 구축	
전략	지역자원 상업화와 민간투자 유치로 로컬 콘텐츠 상권 구축 및 지역소멸 해결
주요 과제	① 발굴된 지역자원 사업화 및 브랜딩 ② 상권에 최적화된 지역 내 혁신창업가 발굴·양성, 관계자 역량강화 ③ 단계별 로컬 콘텐츠 창출
사업추진 인프라	주관기관, 지역상인, 지역민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체계 강화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① (기반) 매력있는 상권 조성을 위한 HW/SW 기반조성 및 거버넌스 구축 >기대효과> 신규창업과 협업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	
② (창업) 지역브랜딩 강화 및 혁신형 창업가 발굴·양성 50명 >기대효과> 창의적 지역창업가 유치로 미래사회에 대한 대응력 제고	
③ (성장) 상인역량 제고 및 공유·협업 강화, 민간투자 유치 >기대효과> 상권의 지속발전을 위한 상생구조 기반 마련	

1. 컨소시엄 구성

- 구성원별 역할, 주요업무
 - ※ 주관기관, 지자체 등 컨소시엄 구성원별 역할 분담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팀·지자체 역량·잠재력, 구성원 간 시너지 창출 방안
- 사업 추진 관련 전문가 확보 현황, 활용 계획 등

2. 민간 주도적 사업 추진체계 구축

- 민간 협력 분야 및 상호 업무협약 체결 실적(증빙 첨부)
 -
- 광역-기초-민간-관계부처간 협력적 추진체계
 -
- 사업추진 협력 방안
 -
-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민간의 리스크 관리 계획
 -

<작성요령>

1. 앞서 제시했던 전략방향의 연차별 주요과제에 대한 실제 추진방안을 기술하되, 목표수량, 일정, 예산 등이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개념적, 선언적 기술 지양)
2. 부처, 지자체 협업과제인 경우는 역할, 예산 등의 분담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 기술
3. 민간투자 포함된 경우 투자규모, 투자금 확보방안, 투자금 회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용역이 필요한 경우, 용역내용 구체적으로 기술(용역범위, 금액, 선정방식, 일정 등)
5. 예산내역은 세부항목별 구체적 기술

◆ 다음 4가지 내용을 반드시 포함

- ※ H/W 시설 사업은 운영관리 주체 설정 및 방안 제시 필요
- ※ 주차장 건립 등 중앙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H/W 사업의 경우 작성 지양
- ※ 수익사업 운영계획 수립시 수익금을 활용한 제투자·관리방안 제시 필요

1. 로컬 콘텐츠 창출
2. 상권 거점 조성 및 운영
3. 상권주체 역량강화
4. 민간투자 유치 계획

1. 로컬콘텐츠 창출

- (예시) 역사, 인물 등 지역 스토리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지역 예술가 협업 기반 상권 리더십 프로젝트, 테마형 로컬축제, 관광 연계형 콘텐츠 개발 등
-

2. 상권 거점 조성 및 운영

- (예시) 소규모 상점·공방·체험존이 모인 복합 문화공간, 공유주방, 상권 안내소, 코워킹 스페이스, 라이브커머스 등을 위한 디지털 스튜디오 구축 등
-

3. 상권주체 역량강화

- (예시) 1:1 맞춤형 교육·컨설팅 운영, 선진지 견학, 로컬 크리에이터 발굴 등
-

4. 민간투자 유치

- (예시) 대기업 협업을 통한 투자계획, 투자사 확약 등
-

1. 지자체 행정적·재정적 지원 계획

- ※ 지자체 토지용도변경 및 이용허가 등 지원 계획
- ※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 계획, 교통서비스 지원 계획
- ※ 상권 내 유희공간 등 투입 계획

2. 상인·주민 응화 및 갈등관리

- ※ 계획 관련 상인, 주민 등의 참여 내용·실적
- ※ 기존 상인·신규 상인 간 예상 갈등 해소방안
- ※ 구성원 간 분쟁(의견대립)에 대한 조정방안
- ※ 상권 활성화로 인한 상권 내몰림현상(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4

지역상권 활력지원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총계	
		광역	기초			
1 년 차	사 업 비	세부사업	0000(%)	0000(%)	0000(%)	0000(%)
		소계				
	운 영 비					
		소계				
1년차 소계						
2 년 차	사 업 비	세부사업	0000(%)	0000(%)	0000(%)	0000(%)
		소계				
	운 영 비					
		소계				
2년차 소계						
총 계						

5

추진 일정표

구분	추진 과제	세부과제	추진일정
1차년도		○	
		○	
		○	
		○	
		○	
		○	
2차년도		○	
		○	
		○	
		○	
		○	
		○	
		○	
		○	

1. 성과 측정 및 평가 계획

※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 및 관리·평가 방안

2. 사업 효과

정량적 효과(예시)

구 분	현재 수치	1년차 목표	2년차 목표	최종 목표
유동인구	000명			
매출액	000백만원			
빈점포 수	00개			
고객만족도	00점			

※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정량화된 데이터로 제시

※ 정량적 효과를 평가할 항목은 사업추진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의미있는 항목으로 현실성 있게 설정
(예시) 유동인구, 매출액, 고객 수, 빈점포 증감율, 고용 창출, 신규 창업자 등

※ 기재한 수치는 이후 성과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정성적 효과

※ 사업시행에 따른 정성적 기대효과 제시

(예시) 지역경제 파급효과, 인지도 증대, 이미지 제고, 고객만족도 향상 등

○

○

3. 본 사업을 통해 형성한 네트워크가 향후 확산·기여 가능성

○

○

민간투자 확약서

우리 _____(투자자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지역상권 활성화지원 사업 선정**을 위해 _____(주관기관명)에 아래의 **민간투자**를 확약합니다.

- ① 투자자정보 :
- ② 투자내역 :

20 년 월 일

_____ **(기관명)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별첨 1 구역경계도

※ 고화질 A4 1장. 가로 삽입 가능

별첨 2 사업계획도

- ※ 고화질 A4 1장. 가로 삽입 가능
- ※ 사업시설 배치도(또는 자료사진) 등 사업조성계획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예정지가 사업 적지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제시

별첨 3 타 부처 연계사업 구역 경계도

※ 지역상권 활력지원 사업과 타 부처 사업 간 중첩되는 구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 해당 시도, 시군구 사업과 분리하여 표시할 것, 가로 삽입 가능

별첨 4 기초조사서 (보유시 작성·제출)

※ 자료 별도 첨부 가능

<기초조사서 이행 시 참고사항>

- 가. 기초조사는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집 등을 방법으로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 나. 기초조사는 기준년도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기준년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항목은 과거자료로부터 추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 다. 타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이미 조사된 공식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내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년 이내의 자료수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 라.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 데 필요한 통계자료를 가능한 한 최근 10년간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현황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마. 수집된 자료는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표형태로 변환하거나 대표성 있는 수치를 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바. 기초조사서는 다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해당 구역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대한 이해
 - 해당 구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발전과정과 현재의 모든 기능을 파악하고 이해
 - 해당 구역의 당면과제를 파악하고 원인과 해결방안 모색 자료로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한 지표로 활용
 - 해당 구역과 인접지역의 상호간의 관계와 전체의 구조를 이해
 - 조사 자료의 지속적인 축적

참고 5**지역상권 활력지원 사업비 편성지침**

※ 본 기준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사업비 편성지침

사업비 구성	직 접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사업비의 80%이상 편성(활성화, 환경개선 등)
	간 접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사업비의 20%이내 편성 (인건비, 주관기관 운영비, 업무추진비)

※ 예산안 작성지침

- 지방비의 경우 민간경상/자본 등 예산 성격에 맞추어 계획 수립 및 집행
- 예산안 내 매년 회계정산 비용(연간 사업비의 1.5퍼센트 내외)을 필수 포함하여야 하며, 회계법인은 관리기관에서 지정·안내 예정

< 반드시 간접사업비로만 편성해야 하는 항목 >

1. 주관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예산구분 :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2. 소모성 사무용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예산구분 : 소모품비, 비품수선비)
3. 도서 구입, 보고서 인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예산구분 : 도서인쇄비)
4. 신문, 방송 등을 통한 상권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예산구분 : 홍보비)
5. 회의, 간담회, 평가심의 등에 사용되는 식대, 다과비 등 (예산구분 : 업무추진비)
6.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출장 경비 (예산구분 : 여비)
7. 기타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경비

- 직접사업비는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비(일반용역비, 일반연구비)로 편성 단,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에 한해 직접사업비 편성 가능

< 직접사업비 편성가능 세목 >

1. 위탁용역 제안서평가 수당 (예산구분 : 지급수수료)
2. 교육사업 내 교재 제작비 (예산구분 : 도서인쇄비)
3. 행사사업 내 현수막, 엑스배너 등 홍보수단 제작비 (예산구분 : 홍보비)
4. 공유주방 등 인프라 조성사업 공간 및 집기 임차 (예산구분 : 임차료)
5. 조달청 수수료, 원가계산 수수료 (예산구분: 수수료 및 사용료)
6. 기타 단위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 등 ← 지자체와 사전협의 必

※ 기타 유의사항

-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하며,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은 카드매출전표(사업비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함
- 주관기관은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및 신원보증보험을 필히 제출, 발급 수수료는 협약 체결 후 운영비에서 사용 가능

※ 지출예산과목 세부구분

구분	비목		내역
	목	세목	
직접비	홍보비	홍보비	1. 홍보비(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사업비 5% 이내 실비정산 - 전단, 배너, 현수막, 리플렛 등 안내 및 홍보용 인쇄물 제작비 - 행사 기념품 구입 및 제작비 - TV,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광고 및 광고비 - 뉴스레터, 카드뉴스 등 온라인 홍보물 제작비 - 문자 발송비 - 기타 홍보활동비
		자율사업	1. 커뮤니티 운영, 경진대회 개최 등 주관기관이 주최한 행사성 사업의 경우, 식비(인당 30천원 이내) 편성 및 기념품제작비(인당 20천원 이내) 편성가능 2. 개별 소상공인 직접지원시 업체당 총 5백만원 한도 내 지원 (단,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 시 최대 1천만원까지 가능) 3. 컨설팅 사업 지원 시 컨설팅은 업체당 1일 4시간 이내/최대 4일 수행가능, 컨설턴트 수당은 시간당 10만원/1일 최대 40만원까지 수행가능, 연간 컨설턴트 수당은 1,500만원 이내로 제한 4. 간판·매대 정비사업 등 개별점포를 대상으로 하는 자산 증식의 성격을 띤 사업의 경우 자부담 10% 이상 설정 권고
	사업운영	교육비	1. 인당 한도(20만원) 내 자율편성 및 관리기관이 승인한 바에 따라 사용 - 강사비: 300천원 이내 × 시간 × 강사인원 × 회차 - 교재비: 실비 - 필기구비: 인당 3천원 이내(1회 기준) - 음료다과비: 인당 3천원 이내(1회 기준) - 교육장임차료: 실비 - 기자재임차료: 실비 - 기타 교육에 필요한 비용 * 산식: 20만원 이내 × 교육인원수 × 교육 횟수 ※ 홍보비, 수료식비, 식비 제외 ※ 운영인력 및 이외 운영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한 강사비 지급 불가(다만, 운영인력이 아닌 임직원에 대한 교통비 명목으로 비용 편성 및 지급 가능)
		현장견학비	1. 견학비: 30천원 이내 × (견학인원 + 인솔인원) × 1일 × 회차 1) 견학지 입장료, 상해보험료, 식비(음료다과비 포함)에 한해 편성 2. 차량임차비: 1백만원 이내 × 1일 × 회차 3. 여행자보험: 실비
		일반용역비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 운영, 콘텐츠 제작,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생시키는 비용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집행

구분	비목		내역
	목	세목	
		일반연구비	1. 국가로부터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 비용
간접비	인건비	운영인력	1. 지역상권 활력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주관기관 소속 인력에 대한 인건비 - 봉급,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퇴직급여충당금 등 포함 - 인건비의 집행은 주관기관 내규에 따름
		일용직	1. (최저임금 × 시간) + 중식비 + 법정(회사)부담금 1) 근로기준법 준용
	운영비	일반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 용지,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비 ※ 재물조사 대상 제외(사무집기·가구, 사무기기 등)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명함, 각종 양식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 홍보성 인쇄물 제작비 제외(홍보비에 편성) 3. 소모성 물품 구입비 - 토너 카트리지, 드럼 등 전산기기의 소모품 구입비 4.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 잡지, 도서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5. 비품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전산기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 제외(주관기관에서 부담) 6.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7.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전문가 활용비 - 전문가 자문료, 평가·회의참석 사례비, 원고료 * 세부기준: (평가·자문) 시간당 10만원(1일 40만원 이내) (회의) 시간당 7만원(1일 30만원 이내) ※ 주관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각종 수당 지급 불가
		공공요금 및 제세	1. 공공요금 - 우편·전화요금, 철도·택배·퀵 서비스 등을 활용한 화물 운송요금,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세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화재보험 등)

구분	비목		내역
	목	세목	
		특근매식비	1. 경상 사무를 위해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급식비(근무일지 작성 必) * 세부기준: 1식 1만원 이내 실비 지급
		임차료	1.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각종 평가, 회의·간담회 장소 등) 2.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3. 버스·승용차 등의 일시 임차료(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등) 4. ASP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MS오피스, 한글 등) ※ 사무실, 사무집기(가구) 및 사무기기 임차료 제외
		기타운영비	1. 상비약·구급함, 방역물품 구입비 2. 운영인력 자체교육 강사료 및 외부교육 참가비 3. 사무실 비치 및 내방객 접대를 위한 음료다과 구입비
	여비	국내여비	1. 업무협의, 설명회, 교육 참석 등을 위한 국내여비 1) 주관기관이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집행하되,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하단의 집행 기준에 따라 집행(기관의 지급기준은 집행시 별도 제출) - (시내출장) 일비 2만원 정액지급 (시외출장) 일비 2.5만원 정액, 식비 2.5만원 정액지급 2) 국외여비의 경우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해 가능
		국외여비	1. 운영인력 국외 출장경비 * 세부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지급기준: 별표 1의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1. 각종 평가, 회의, 간담회 등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음료다과 구입비 및 식비 * 세부기준: 인당 3만원 이내(음료다과구입 및 식비 구분없이) ※ 주류구매 제외 ※ 기관간의 비공식적인 섭외, 업무와 관련 없는 각종 후원금 지급을 위한 편성·집행 불가 ※ 기관, 개인명의로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위한 편성·집행 불가

현물출자 산정 기준

구분	주요내용
사업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공간의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 해당 공간의 임차료(사용료) * 임차료 산정불가 시, 감정평가액으로 같음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인력(일용근로자 제외)에 대한 인건비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월 평균 급여액 × 상근개월 수 * 최근 2년 이내의 연말정산기준이 없을 시 주관기관의 급여 지급 관련 규정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금액 산정기준은 월임차료x사업기간 기준으로 적용 ■ 사업공간 보증금의 경우, 월임차료로 환산(공인중개사의 확인서류 제출 필수) ■ 사업공간, 인건비 외 항목은 관리기관의 사전승인 건에 한해 인정 	